



삼일회계법인

K-IFRS 1118호 도입

중견기업을 위한 신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기준서 자문





IFRS 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IFRS 1118호의 제정 배경에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FRS 1118호는 기존 IAS 1을 대체하는 기준서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이 필요합니다.

IFRS 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기준서 제정 배경

- ⊙ 재무제표 이용자와 일반적인 이해관계자는 재무성과 보고에 대한 프로젝트를 요청
- ⊙ 재무제표 이용자는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보다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특정 재무 측정치가 일관되게 처리되기를 원함
- ⊙ 재무제표 이용자는 기업의 재무제표 표시가 더 구조화되고 투명하기를 원함
- ⊙ 재무제표 이용자는 재무제표의 세분화에 대한 기준이 불충분하다고 여김



IFRS 1118호 주요 변경 사항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	손익계산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통합과 세분화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기능과 명확한 지침 제공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5가지 범주로 분류 영업손익은 나머지 4가지에 속하지 않는 잔여 범주로 정의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식별을 위한 요구사항, 측정방법,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	공유되는(또는 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기준으로 통합 및 세분화할 것을 요구함



Why 삼일PwC?

검증된 전문성 & Know-How

- 회계기준원,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IFRS 1118호 국내 도입 논의부터 참여하여 전문성 확보
- S사, P사, H사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IFRS 1118호 자문 서비스 기제공 경험 보유

Global Network

- 미국·아시아·유럽 주요 국가에 포진한 PwC Network를 통해 해외 사례 등 Benchmark 가능
- 미국·아시아·유럽 주요 국가에 삼일PwC 파견자 보유, 해외 자회사 IFRS 1118호 자문 Co-work 제공

중견·중소기업 전문

- 중견기업 특화서비스팀(Mid-Hub)을 통해 한국 경제의 중추인 중견기업 최적의 맞춤형 Solution 제공
- 중견기업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감사 및 비감사 업무경험을 통한 Best Practice 보유

Service Process

자문 과정에서 지속적인 IFRS 1118호 기준서 교육제공 (본사 & 자회사 회계담당자)

Step 1
IFRS 1118호 교육 및 전반 영향 분석

- 본사 및 자회사 IFRS 1118호 도입 최적 프로세스 설계
- 그룹 전반 영향 분석(주된 사업활동의 판단 등)



Step 2
손익계산서 영향 분석

- 영업·투자·재무 범주 분류 검토
- 유의한 계정 세부 전표 분석
- IFRS 1118호 하에 손익계산서 및 주식 업데이트



Step 3
통합·세분화

- 기존 CoA에 대한 통합·세분화 분석
- 기존 공시된 감사보고서상 정보에 대한 통합·세분화 분석



Step 4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MPMs)

- 기업이 공개한 정보를 토대로 MPMs 검토·분석
- 유사 업종 기업 사례와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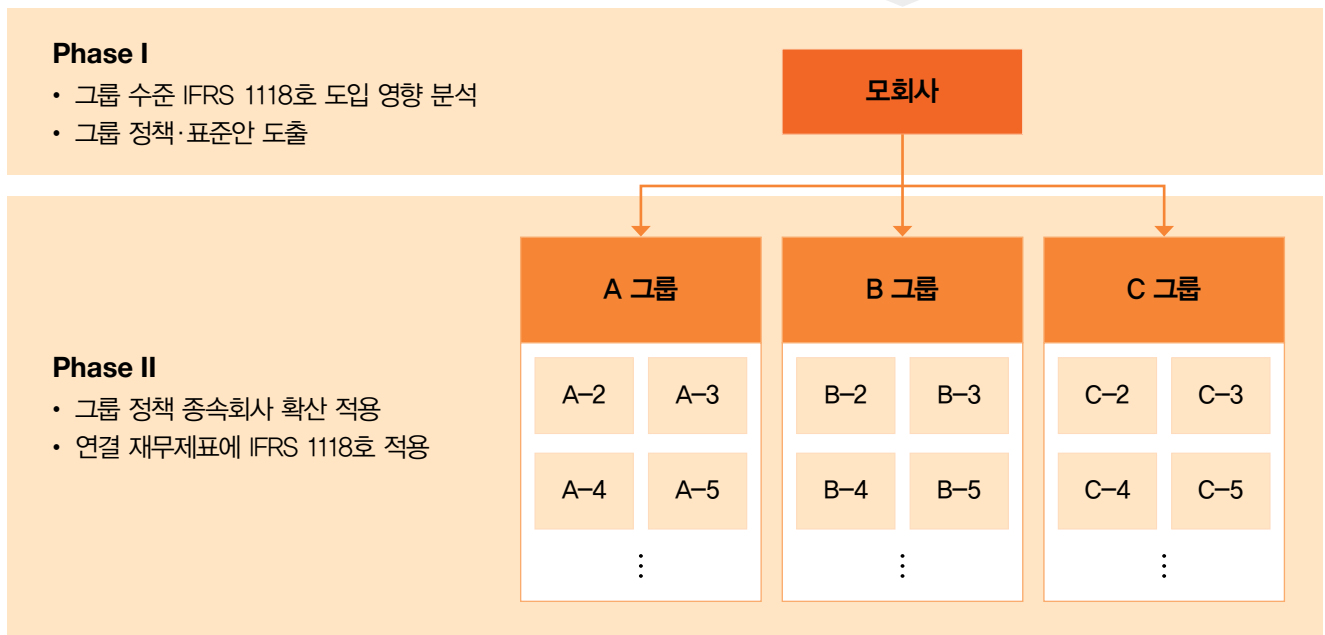
기업 Needs에 따라 별도 및 연결 CoA에 대한 전반 개선 자문 제공



중견·중소 기업의 IFRS 1118호 사전 준비

Phase I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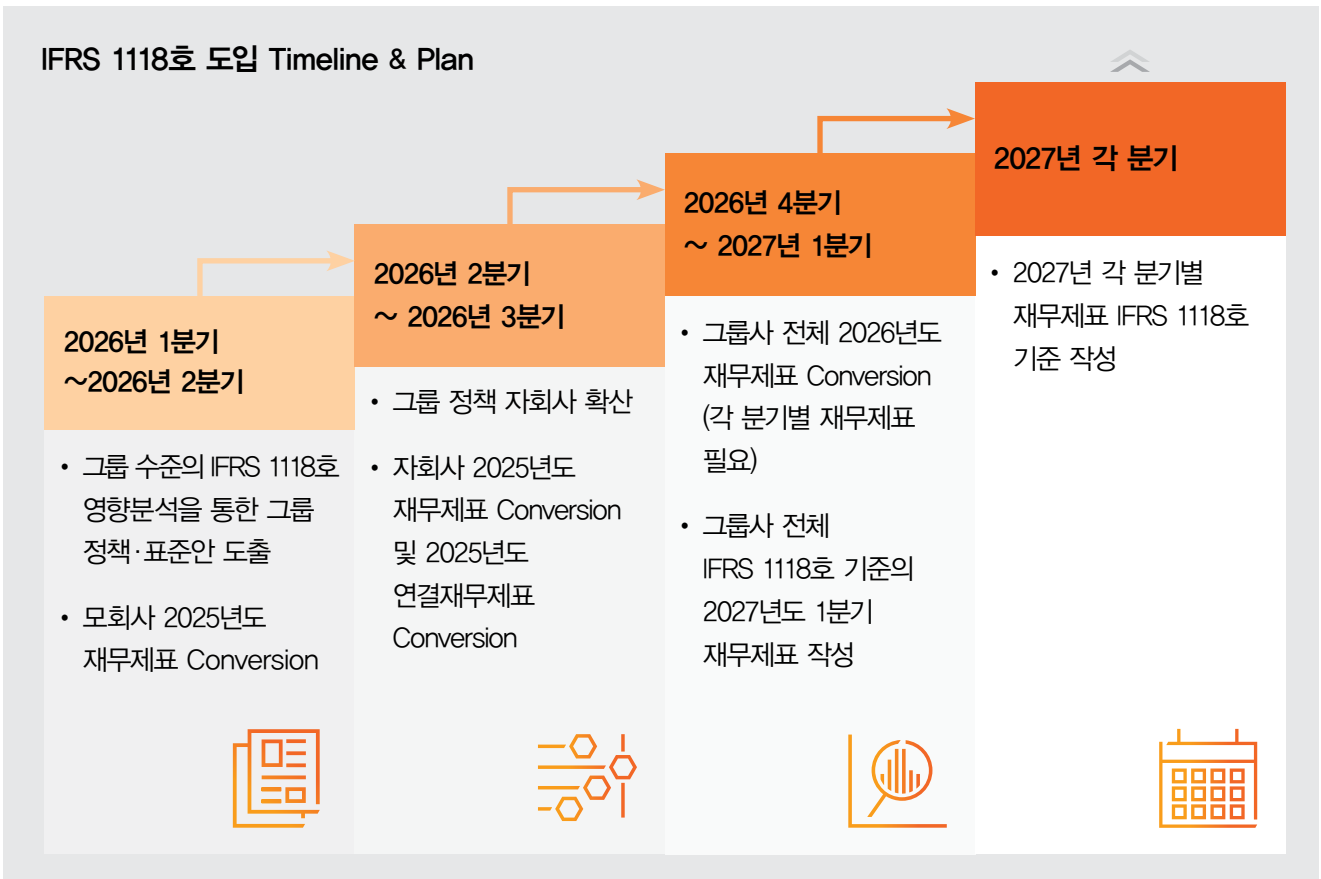
IFRS 1118호 도입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그룹 모회사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며, 그룹 수준 영향분석 및 정책 확산을 통해 그룹 전체 일관성 확보와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Timeline & Plan

IFRS 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공시(3개년 비교 공시) 및 검토 및 감사보고서상 비교 표시(직전연도)를 위해서는 2025년 및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COA 체계 재정비가 필요한 바, 시스템의 데이터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 연계 작업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시스템 반영 후 정합성 확인을 위하여 Pilot test의 선행이 필요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약 2~3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참고 1. 증권·중소기업 IFRS 1118호 도입 주요 업무 및 산출물 예시

증권·중소기업 및 국내외 증속회사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문 업무 수행을 위해 삼일PwC는 하단의 증권·중소기업 최적의 Checklist와 Template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요 업무	주요 수행 업무	주요 산출물	Checklist 활용
IFRS 1118호 기준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서 영향 분석 • 이슈사항 분석을 통한 그룹 주요 과제 도출 • 대안 논의 및 그룹정책 확정 및 문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분석 Log •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Position memo (필요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서 사전영향분석 Checklist
재무성과표 영향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익계정 분류 영향분석 및 그룹 확산을 위한 분류 확정 • 그룹 CoA 체계 재정비 • 그룹 표준 재무제표 및 주식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익계정 분류 재무영향분석서, 분석 Template • 재정비된 CoA 체계도 • 그룹 표준 재무제표 및 주식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A 영향분석을 위한 점검사항 Checklist • 재무제표 및 주식 표준사례 Template 활용
MPMs 영향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PMs 현황 검토 • MPMs 주식공시사항 표준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PMs 검토파일 및 이슈 Log • MPMs 및 주식공시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PMs 판단 및 완전성 Checklist • MPMs·주식사례 Template 활용
통합 및 세분화, 결산 시스템 연계 (별도·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및 주식의 통합 및 세분화 검토 • 통합 및 세분화 규칙과 중요성 기준 마련 • 그룹 내 CoA 매핑 일관성 검토 • 별도·연결 결산 시스템 변화관리 (필요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주식 통합 및 세분화 규칙, 중요성 산정내역 • CoA 매핑 일관성 검토내역 • 시스템 영향 분석서 및 개선안 (필요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수준의 IFRS 1118호 영향분석을 통한 그룹 정책·표준안 도출

참고 2. K-IFRS 1118호 수정 도입 방안

금융위원회는 기업 및 정보이용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현재 우리 방식의 영업손익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적용하도록 별도 표시하는 수정 도입 방식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도입 방식 주요 내용

- 현행 기준 영업손익을 별도 산출하여 주식에 기재 하도록 하였으며,
- K-IFRS 1118호와 현행 기준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 주식 공시 필요
- 시행일로부터 3년간 현행 기준 영업손익 비교공시 필요(2027~2029년까지)
- 시행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현행 기준 영업손익의 병기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주식공시 연장 여부 결정 계획



Contacts

이재혁 Partner

jae-hyuk.lee@pwc.com
02-709-8822

최성우 Partner

sung-woo.x.choi@pwc.com
02-709-8048

이석원 Director

seok-won.lee@pwc.com
02-709-8327

서동현 Director

dong-hyun.seo@pwc.com
02-3781-2538

홍승환 Partner

seung-hwan.hong@pwc.com
02-709-8822

서종혁 Partner

jong-hyuk.seo@pwc.com
02-3781-1429

임현와 Director

hyun-wa.im@pwc.com
02-709-4065

신재익 Director

jae-ik.shin@pwc.com
02-3781-9293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601A-BR-08

© 2026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Korea group of member firms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